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적 극 행 정 운 영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강화 및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효력을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으로도 징계 관련 불이익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형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등(안 제4조, 제17조 일부 개정)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부책임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기관의 보호 없이 공무원 개

인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음.

- 민·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내용 변경 및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신설 등
(안 제10조, 제12조 일부 개정)

- 위원장은 안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등(안 제13조, 제14조 일부 개정)

- 지방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와 일상에서의 상시적인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라.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의결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면책 추정
(안 제15조 일부 개정)

-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특례 마련(안 제21조 신설)

-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의결로도 사전 의사결정과 동일한 징계면제 효력 부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원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0. 31. ~ 12. 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2 중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의 복잡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과 협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2. 예산관리 및 계약 업무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로”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3조 및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으로, “우수공무원”을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직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본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감사기구의 장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제7항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해당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고, 감사 이해도가 높고 법률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지정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영을 긴급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중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은 “공무원의 요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으로 본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이 긴급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
2. 법령이나 지침이 불명확하거나, 신중 또는 복합 재난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생략) 1. ~ 3. (생략)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u>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u>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 ----- <u>지원에 관한 사항</u>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생략) <u><신설></u>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u>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신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

안의 복잡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과 협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2. 예산관리 및 계약 업무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 매

년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 제13조 및 「감

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 8.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
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
로서 (이하 생략)

③ (생 략)

제15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④
(생 략)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

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기
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직자에-----

-----.

1. ~ 8. (현행과 같음)

② -----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2조제1항-----

<신 설>

⑥ -----

----- 해당 공무
원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

_____.

_____.

1. 감사기구의 장이 명시적으로 반
대의견을 제출한 경우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해당 공무

원(해당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

② -----
제2호 및 제3호의-----

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

-----.

⑤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다만, 법원의 판
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
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해
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고, 감사 이해도가 높고 법률 전
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지정하
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에 -----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21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긴급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중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은 “공무원의 요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으로 본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이 긴급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
2. 법령이나 지침이 불명확하거나, 신종 또는 복합 재난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연 락 처	(044) 205 - 3293